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76호 2022. 12. 02(금)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남원시 조례 제1837호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2-231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 열람 공고----- 7

회 람										
--------	--	--	--	--	--	--	--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2월 2일

남원시 조례 제 1837 호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남원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수금”이란 다른 회계·기금 등에서 이자지급 등의 조건으로 관리를 위탁 받는 자금을 말한다.
2. “예탁금”이란 일반·특별회계, 다른 기금 등에서 관리를 위탁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용자금”이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른 회계·기금으로 예탁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액을 3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의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 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황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 ③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증서)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경우에는 예탁금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이자)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존속기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 12. 31.으로 한다.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현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이 정기 예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기간 만료 후 통합기금으로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②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운용할 수 있다”를 “운용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은 「남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③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관리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④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에 “운용한다”를 “운용하며 여유자금은 「남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조성할 수 있다”를 “조성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은 「남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⑥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항에 “관리하고”를 “관리하며 여유자금은 「남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⑦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관리하여야한다”를 “관리하며 여유자금은 「남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⑧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관리한다”를 “관리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은 「남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⑨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취급한다”를 “취급하고, 여유자금은 「남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남원시 공고 제2022-231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 열람 공고

남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인 『산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열람 공고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22년 12월 2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산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산92-3번지 외 3필지
 - 사업의 규모 : 1,62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원시장(교통과장)
 -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 ~ 2023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6. 열람기간 : 시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4)
8.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편입 토지 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시	면	리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계			4필지			15,374	1,624					
1	남원	산내	부운	산92-3	임	8,636	1,168	전라북도				
2	남원	산내	부운	산92-11	임	198	80	전라북도				
3	남원	산내	부운	산92-16	도	176	176	국유지 (건설부)				
4	남원	산내	부운	산92-6	도	422	200	국유지 (건설부)				